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의 주요내용

I. 들어가는 글

영국에서의 뇌물(Bribery)의 사전적 정의는 “판단(Judgement)이나 [행정적] 행위(Action)에 있어, 부정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돈(money) 혹은 기타 보상(Other payment)행위를 주고 받는 행동(act) 혹은 실제행위(practice)”를 의미한다.¹⁾ 특히 이러한 뇌물의 정의 말미에 “특히 의회 내의 선거 및 기타 표결에 영향력을 끼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기술한 것으로 보아 영국 정치사에서 뇌물이 비교적 큰 이슈가 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시대 분경(奔競)이라 부르던 엽관(獵官)행위가 존재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을 놓고 왕권과 신권 사이의 갈등이 조선의 정치사의 한 단면이다. 굳이 영국

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정치와 뇌물의 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역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 전통을 지켜온 영국이지만 영국 정치 - 특히 선거 시기와 맞물려 - 와 뇌물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 역시 일찍부터 제정되어 왔다. 부정방지를 위해 접대법(Treating Act 1696)이나 뇌물법(Bribery Act 1729) 등이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부정부패는 만연했다. 예를 들어 1832년 스탬포드(Stamford) 지역의 경우 1000명의 유권자 중 850명이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받을 정도였다고 한다.²⁾ 결국 영국 정부는 1893년, 부패방지법(the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을 제정하여 선거 및 정치활동에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The act or practice of giving or accepting money or some other payment with the object of corruptly influencing the judgement or action, spec the application of such influences to gain votes at a parliamentary or other election. in Oxford English Dictionary (Online): <http://www.oed.com.chain.kent.ac.uk/view/Entry/23161?redirectedFrom=bribery#> (2010년 12월 10일 접속).

2) 강원택, 「정치자금의 투명화, 영국의 사례」, 『업 코리아』 (2003년 11월 10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0&aid=0000000153> (2010년12월 9일 접속).

서의 금품수수에 관한 가이드라인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지켜 왔었다.

그러나 그 이후 정치·경제·사회 환경이 급격히 변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걸맞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 및 개인의 해외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행위가 문제시되어 왔었다. 따라서 영국 의회는 놀란(Nolan)을 위원장으로 삼아 법률위원회((Nolan Committee)를 구성하였고, 곧 “Report on Standards in Public Life 1995”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뇌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후, 의회는 법률위원회(The Law Committee)를 설치하여 뇌물수수 관련 법률검토서인 “Legislating the Criminal Code: Corruption, Report No.248”을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꾸준히 법률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고, 그 결과물이 영국 정부가 발표한 뇌물수수법안(Bribery Bill)이다(2009년 3월 25일).³⁾

본고는 2011년 4월 발효를 앞두고 있는 영국의 뇌물수수법의 개요를 파악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려고 할 것이다.

II. 영국 뇌물수수법의 주요 내용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t 2010, chapter 23)의 콘텐츠는 크게 6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일반적인 뇌물수수 위반(General Bribery offences)’; 제6조는 ‘타국 공무원(정치인포함)에 대한 뇌물(Bribery of foreign officials)’;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뇌물 방지에 실패한 상업기관(Failure of commercial organisations to prevent bribery)’; 제10조와 제11조는 ‘기소와 처벌(Prosecution and penalties)’;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기타 관련 법률 위반(Other provisions about offences)’; 제16조부터 마지막 제20조까지가 ‘부칙 및 최후 조항(Supplementary and final provisions)’;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첨(Schedule 1,2)’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법은 법적 공지는 영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책임을 진다. 국무장관은 이 법의 준수를 위해 법률 절차에 관한 지침서(Guidance)를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Section 9(1)), 만약 본법과 관련되어 수정(revisions)이 되었을 때에도 관련 지침서를 발행해야 한다(Section 9(2)). 또한 국무장관은 발행 전에 스코틀랜드 장관들(Scottish Ministers)에게도 반드시 상의하여야 한다(Section 9(3)). 궁극적으로 지침서의 발행은 이러한 모든 여건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발행된다(Section 9(4)).

영국의 뇌물수수법을 분석한 독일의 국제 법



3) Explanatory Notes for Bribery Act 2010 (c.23).

를 사무소(Norton Rose: Internationale Rechtsanwaltskanzlei)는 영국 뇌물 수수법의 주요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⁴⁾

- 엄격한 책무에 관한 규정(Strict liability);
- 국외 지역에서의 사법권(Extra territorial jurisdiction);
- 관련자에 관한 규정(Associated Persons);
- 사적 뇌물에 관한 규정(Private bribery);
- 부당행위 규정(Improper performance);
- 외국 공무원에 관한 규정(Foreign public officials);
- 간접적 뇌물에 관한 규정(Indirect bribery);
- 개인의 의무(Individual liability);
- (사업)촉진을 위한 대가에 관한 규정 (Facilitation payments);
- 기소와 처벌(Prosecution and Penalties).

본고에서는 이 분류 방식에 의해 영국 뇌물수수법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 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다.

(1) 엄격한 법의 준수(Strict liability)

본법은 제3조(Section 3)에 뇌물수수가 발생될

수 있는 환경 및 범위(Activity)를 규정하였고, 제4조(Section 4)에는 뇌물수수 관련 부적절한 행위(Improper performance)를 다루고 있다. 제3조(2)(a)~(d)에는 뇌물은 공공 권력(public nature)⁵⁾을 가진 모든 환경, 비즈니스⁶⁾와 관련된 모든 행위, 고용 관련 절차에 해당되는 모든 행위 그리고 법인 혹은 개인을 대리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행위는 영국과 어떠한 연관이 없거나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지더라도 적용된다고 하였다(Section 3(6)(a)(b)). 그런데 본 법안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받는 것은 본법을 위반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즉 적법한 절차 및 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례(culture)인 경우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추후 문제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제5조 제2항에는, 제3조에서 언급한 행위 및 범위가 영국 국내법 및 지역 관습법에 의해 법률로서 명문화(the written law)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법의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Norton Rose는 영국 부패척



4) Norton Rose, UK Bribery Act: Ten things you should know: <http://www.nortonrose.com/knowledge/publications/2010/pub27154.aspx?page=all&lang=de-de> (2010년 12월 9일 접속). cf. 참고로 Norton Rose는 마지막 소주제로 “공공 조달에 관한 규정 (Public procurement)”로 분류하였으나 이 본고에서는 대신 기소와 처벌로 분류하도록 하겠다. 또한 네 번째 소주제에 포함되어 있던 ‘외국인 공무원(정치인 포함)에 대한 뇌물(bribery of a foreign public official)’은 여섯 번째 주제인 ‘외국 공무원에 관한 규정’에 포함시켜 설명하도록 하겠다.

5) Supra Note 3. 한편 본 조항에서 nature란 authority(권력)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public authority의 보다 정확한 개념은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에 정의되어 있다.

6) 본 법에서의 비즈니스(Business)란 무역(trade)과 직업(Profession)을 통해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Section 3 (7)).

결에 관한 영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본법은 영국 개인 및 기관 등 섹터에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⁷⁾

(2) 국외지역에서의 사법권 (Extra territorial jurisdiction)

제12조는 뇌물수수법이 적용되는 영토적인 범위(Territorial application)와 적용 대상이 되는 법인 및 개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외국 국적인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처벌 조항이다. 본법은 사업의 성격, 형태, 범위 및 내용을 불문하고 영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하는 뇌물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Section 12 (5),(6)). 또한 영국에서 사업을 갖고 있는 외국 법인이나 개인이 영국 외의 지역에서, 심지어 영국과 전혀 관련 없는 (사업) 행위일지라도,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뇌물수수법에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Section 12 (4) (e)~(h)).⁸⁾

(3) 관련자에 관한 규정(Associated Persons)

뇌물수수법 제8조는 뇌물수수 행위에 개입된 관련자에 대한 규정이다. 본법 규정에서의 관련자란 뇌물수수 행위를 의도한 “C”의 행위를 대리한 “A”를 지칭하며(Section 8(1)), 불법행위

에 있어서 “A”는 “C”의 피고용인이나 대리인일 수도 있으나 “A”의 지위(capacity)는 중요하지 않다((Section 8(2),(3)). “A”가 “C”를 위해 위반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는 단지 “A”와 “C”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련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모든 정황에 의해 판단된다((Section 8(4)).

(4) 사적 뇌물에 관한 규정(Private bribery)

일반 뇌물수수(General bribery offences)의 법적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1조에 의하면, 뇌물 제공자란 상대방에게 자신과 연관된 직무 및 활동을 부적절하게 유도할 의도를 가지고 재정 혹은 기타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보상하는 자를 의미한다(Section 1(2)-Case1). 이러한 행위가 이익을 구성한다고 믿거나 인식하는 경우에도 뇌물수수 위반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Section 1(3)-Case2). 한편 제2조의 수뢰자의 정의는, 재정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받아, 자신의 지위로 직무와 행위가 부적절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한 사람을 의미한다(Section 2(2)-Case3). 마찬가지로 뇌물 제공자의 의도에 부응하는 부적절한 행위 자체를 수용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도 수뢰자로 규정된다(Section 2(3)-Case4).



7) Supra Note 4.

8) 영국 뇌물수수법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개인(법인 포함)은 국내외에 체류에 영국 국적자(혹은 영국에 사업 등록한 법인)이거나, 비영국 국적인 경우 영국 영주권자 혹은 영국 정부에 등록된 법인 혹은 단체이다.

한편 제3조에서는 거래에 있어서의 뇌물 수수와 관련 직무 또는 행위(Function or activity to which bribe relates)가 발생하는 조건(Conditions)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던 '적절한 절차(adequate procedures)'는 제3조(3)~(5)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행위가 올바른 신념으로 이루어질 것(3)
- 행위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4)
- 행위는 신뢰에 의해 이행되어야 할 것(5)

(5) 부당행위 규정(Improper performance)

제4조는 뇌물수수 관련 부당행위(Improper performance)에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뇌물수수 관련 범죄행위의 요건으로서 일단 뇌물 제공자의 의도가 중요하다. 달리 말해, 뇌물을 받는(받을) 자가 자신의 의무를 부적절하게 오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부당행위란 행위에 있어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적절한 범위'에 벗어나는 것, 즉 이와 같은 통상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를 말한다(Section 4(1)). 이 규정에서 '예측가능한 적절한 범위(Relevant expectation)'는 제3조의 (3)~(5)의 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Section 4(2)).

(6) 외국 공무원에 관한 규정 (Foreign public officials)

다른 유사 해외 법제, 이를테면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97) 등과 비교해 이번 영국 뇌물수수법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해외 사업시 외국 공무원 및 정치인들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부당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점이다. 제6조에는 이에 해당하는 외국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우선 본조에서의 외국 공무원(Foreign public official)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영국 이외의 국가, 영토에서 선출, 임명되어 입법, 행정 혹은 사법을 담당하는 지위를 가지거나, 그 해당 국가를 대표해서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 하며 (Section 6(5)(a)~(b)), 이 범주에는 공공 국제조직(Public international organisations)의 담당자(officials) 혹은 대리인(agent)도 포함한다(Section 6(5)(c)).⁹⁾

물론 非영국 국적자인 외국 공무원의 경우, 본 뇌물수수법으로는 기소나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돈 혹은 향응을 제공받은 외국 공무원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가의 법률 혹은 공공국제조직의 내규의 적용을 받게 된다(Section 6(7)(a)~(c)).

(7) 간접적 뇌물에 관한 규정(Indirect bribery)

본법의 제1조에 규정되어 있듯이, 뇌물수수에 있어서 그 지급 방법이 비록 간접적으로 이



9) Section 6(6)(a)~(d)는 공공 국제조직의 담당자 및 대리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국가 혹은 영토; (b) 국가 혹은 영토의 정부; (c) 기타 공공 국제조직 그리고 (d) 위의 혼합 형태 등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말한다.

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모든 위반행위(부패성 보상) 법률로써 처벌한다. 즉, 이 행위에는 제3자를 통해 제공 혹은 약속한 경우도 포함한다(Section 1(5)).

(8) 개인의 의무(Individual liability)

개인의 행위가 본법의 제1조, 제2조 혹은 제6조를 위반 하였을 시에는 뇌물수수 범죄행위로 본법을 위반했을 때에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및 벌금형의(혹은 유기징역과 벌금이 포함된) 처벌을 받게 된다.¹⁰⁾ 특히 중요하게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수뢰자가 뇌물 제공자의 정확한 의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할지라도 본법으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다(Section 2(7)(8))는 점이다.

(9) (사업)촉진을 위한 대가에 관한 규정 (Facilitation payments)

미국의 FCPA(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1997)가 약간의 보상 혹은 수수료(small facilitation; grease)에 대해서 예외적인 규정을 둔 것에 비해,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이에 대한 어떠한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4조 3항에 의하면, 본법은 어떠한(anything) 대가지급 및 수수가 과거의 행위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면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해외 국가의

관습에 따라 돈 혹은 편의를 주고받을 때에도, 그에 관계없이 법률적 위반 사항이 행위에 포함되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10) 기소와 처벌(Prosecution and Penalties)

뇌물수수법 제10조는 기소, 제11조는 그 법률 위반에 관한 처벌에 관한 조항이다.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경우 본법의 위반이 다음의 세 곳의 기소국장(Director)의 허가로 기소된다: Public Prosecutions, the Serious Fraud Office 혹은 Revenue and Customs Prosecutions (Section 10 (1),(3)). 이에 반해 북아일랜드의 경우에는 Public Prosecutions for Northern Ireland 혹은 the Serious Fraud Office의 Director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Section 10 (2),(3),(8)).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경우 기소국장은 반드시 직접 기소를 해야 하는데(Section 10 (4)), 만약 기소국장이 부재할 경우에는 기소국장이 임명한 대리인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그 업무절차는 동일하다(Section 10 (5),(6)). 다만 북아일랜드의 경우, 그 지역의 기소국장 대표(Deputy of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가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는 이상 기소국장이 잉글랜드·웨일즈와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자를 기소할 수 있다.¹¹⁾

제11조는 처벌(Penalties)에 관한 조항이다. 본법 제1조, 제2조 및 제6조를 위반했을 때에는, 즉



10) 처벌 및 형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 기소와 처벌(Prosecution and Penalties)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11) 북아일랜드의 “기소국장 대표가 갖는 권한에 관한 법률(Powers of Deputy Director of exercise functions of Director Act, 2002)”의 (Section 30(4), (7))에 근거한다.

결 처분(약식 재판: summary conviction)인 경우에 12개월¹²⁾을 넘지 않는 유기징역 혹은 법정 최고액의 벌금액을 넘지 않는 벌금(혹은 이 둘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Section 11(1)(a)), 정식 구속 재판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법정 최고액을 넘지 않는 벌금(혹은 이 둘을 포함한) 처벌을 받게 된다(Section 11(1)(b)). 이외 관련 당사자(any other person)가 본법의 조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즉결 처분일 경우나 정식 재판 모두 법정에서 규정한 벌금형을 받는다(Section 11(2)(a),(b)). 또한 제7조 위반으로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형을 받게 된다(Section 11(3)).

(11) 기타

제7조는 상업기관에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위반하였을 때(Failure of commercial organisation to prevent bribery)에 대한 규정이다.¹³⁾ 관련 상업기관(이하 “C”)는, “C”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이하 “A”)가 다른 이에게 사업을 유지 및 획득 혹은 “C”를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본법의 위반자에 해당된다(Section 7(a),(b)). 이 부당 행위 발생에 참여한 “A”는 본법

제1조와 제6조의 법률적 적용을 받게 된다(Section 7(3)). “C”역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다.

한편 제14조는 스코틀랜드와 그 외 지역의 파트너십에 관한 규정이다.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정치적 민감성으로 인해 본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본법을 스코틀랜드인(혹은 법인)과의 동업에 대한 법률적 적용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법의 제14조는 제1조, 제2조 및 제6조에서 언급한 뇌물수수 행위가 스코틀랜드인 동업자(Scottish Partnership: 법인 포함)와 이루어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Section 14(1)). 만약 해당 위반 행위가 스코틀랜드 동업자의 고위 관계자(Senior officer)¹⁴⁾의 동의나 묵시로 행해졌을 경우에는 이들은 본법의 적용을 받아 소송 및 처벌을 받을 책임을 지게 된다(Section 14(2)(a)(b)).

마지막으로, 본법으로부터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받는 정보 및 국방에 관련된 사안이다. 본법 제13조는 뇌물수수로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요건으로서 국방 및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첩보: intelligence)와 국방군(armed forces)¹⁵⁾에 속한 자들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반드



12) Northern Ireland의 경우에는 징역형이 6개월을 넘기지 않는다(Section 11(4)(b)).

13) Relevant commercial organisation 의미는 제7조(5)(a) 영국의 법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 (b) 영국의 지역 내 사업 행위를 하는 조직체; (c) 영국 내의 법에 구속 받는 파트너십; (d) 또 다른 형태의 파트너십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4) 여기서 고위 관계자(Senior officer)라 함은 법인과 관련된 책임자, 매니저, 직원 또는 기타 법인의 동종의 관련 담당자 (Section 14(4)(a)).

15) 여기서 국방군이라 함은 Armed Forces Act 2006에서 규정한 영국 정부의 정규군대를 의미한다.

시 정보기관 혹은 현역에 복무(active service)¹⁶⁾ 중인 자이다(Section 13(1)(a),(b)).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언제나 법률 적용에서 자유스러운 것은 아니다. 정보 및 군 책임자들은 이들의 뇌물행위가 작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Section 13(2),(3)), 이들의 해명은 국무장관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야 한다(Section 13(4)).

III. 나가는 글

영국의 뇌물수수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한때 해가 지지 않은 나라로 불렸던 영국이 2류 국가로 몰락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고위층의 모럴 해저드였으며,¹⁷⁾ 최근 고위 검사가 2만 파운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사건까지 발생하였다.¹⁸⁾ 이외에도 정치인 및 경제인들이 저지른 부패 관련 뉴스는 심심치 않게 영국 국내 이슈거리가 되어 왔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수뢰자가 사전에 뇌물제공자의 기대 이익과 자신의 관련 업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본법의 위반사실이 들어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공무원 및 정치인의 처신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는, 영국인 및 영국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영국 국내 및 해외에서의 부당 행위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 사업을 추진 및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관련을 맺게 되는 외국 공무원(정치인)들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비록 소액의 리베이트 등이 현지의 관습이라 할지라도 위반자는 영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방·안보를 목적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관의 책임자는 반드시 이 행위가 공익 및 국익을 반드시 필요한 행위였다는 것을 제시해야만 할 만큼 법집행이 엄격해 졌다.

결론적으로 영국 정부는 국내 경제의 위축과 영국 기업들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이라는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감수하면서 본법의 엄격한 집행을 공언하고 있다. 지나치게 과격하고 이상적어서 실제 법집행에서의 효용성이 의문시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공정 사회 확립을 위한 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만큼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조 의 행

(영국주재 외국법제조사원)

16) 여기서 현역복무라 함은(Section 13(5)), (a) 적군에 대한 작전 및 군사행동; (b)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영국 이의 지역에서의 작전; (c) 점령 중인 외국 혹은 해외 영토를 의미한다.



17) Etoday, 「투기·수뢰·표절·도덕상 상실은 '우리시대 자화상: 이노베이션 코리아-초일류 국가의 조건, 도덕성의 재발견」 ((2010년 10월 13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0799&idxno=366199> (2010년 12월 14일 접속).

18) BBC, 「Corrupt Gwent CPS lawyer jailed over £20,000 bribe,」 (2010년 7월 14일): <http://www.bbc.co.uk/news/uk-wales-south+east+wales-10636116> (2010년 12월 14일 접속).